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-책임/일반배상

2. 보험상품의 명칭 :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

3. 보험의 목적

법률상의 배상책임

4.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
가. 보험기간 :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나. 보험료 납입주기 :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,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적용계약의 경우 일시납, 2회분납, 4회분납으로 할 수 있다.

5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「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7. 기타

가. 보험료의 할인·할증에 관한 사항
이 보험의「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」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나. 보험료 납입 최고(독촉) 기간 :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다. 보험료의 반환 :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라. 약관대출 : 회사는 약관대출을 하지 않는다.

마. 보험 종목의 변경 : 회사는 보험 종목의 변경을 승낙하지 아니한다.

바. ‘사이버 사고 보장제외 특별약관’ 및 ‘전염병 보장제외 특별약관’조항은 비통계요율을 적용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.